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7
----------	-------

발의연월일 : 2019. 3. 8.

발의자 :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김병관 · 안규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영양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별칙 규정은 없음. 또한, 임상영양사의 경우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수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영양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 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8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양사는 면허증을”을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은”으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21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영양사 업무를 이행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면허의 등록) ① (생 략)</p> <p>② <u>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u></p> <p>③ (생 략)</p> <p>제23조(임상영양사) ① · ②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8조(별 칙) ① <u>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18조(면허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은-----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임상영양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p> <p>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p> <p>제28조(별 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u></p> <p>-----.</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 략)</p>	<p>1. <u>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u></p> <p>2. <u>제21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영양사 업무를 이행한 자</u></p> <p>② (현행과 같음)</p>
--	---